

모두를 위한 ‘특별한 희생에, 특별한 보상’으로 보답하겠습니다.

국가보훈부는 희생이 존경으로, 예우가 감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에 대한 보상에 최선을 다할 뿐 아니라, 모든 세대가 공감하고 함께 실천하는 보훈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.



- 교육지원** 04
 수업료, 학습보조비, 장학금 등을 지원해 드립니다.
- 취업지원** 06
 가점 부여, 취업과 직업교육훈련 등을 지원합니다.
- 의료지원** 08
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진료와 보철구 등을 지원합니다.
- 차량지원** 10
 보철용 차량관련 세금면제, 통행료감면, LPG차량 등을 지원합니다.
- 대부지원** 12
 아파트 특별공급 및 주택·농토구입, 생활안정대부를 지원합니다.
- 복지지원** 14
 안락한 노후를 위한 장기요양급여, 재가복지서비스 등을 지원합니다.
- 교통지원** 16
 철도·버스 등 교통시설 이용을 지원합니다.
- 기타지원** 18
 각종 세액감면과 증명서 발급 수수료, TV수신료, 통신요금 감면 등을 지원합니다.
- 사망시 예우** 20
 사망시 영구용 태극기, 묘비제작비 등을 지원합니다.

5·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자녀, 518민주화운동사망(행불)자의 배우자 및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해 드립니다.

- ▶ 5·18민주화운동희생자는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지원여부 결정
- ▶ 국민기초수급자(생계/의료/주거/교육급여) 및 차상위계층 생활수준조사 생략
- ▶ '16. 6. 23. 이후 신규 등록자의 자녀는 30세 이전(95. 1. 1. 이후 출생자)에 입학한 경우에만 지원
- ▶ '16. 6. 23. 이후 신규등록 5·18민주화운동 부상자(12~14 장해등급)의 자녀는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 결정

▶ 자녀가 중·고등학교에 입학합니다

-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배정받은 학교에 별도 절차 없이 등록금이 면제됩니다.
 - 보훈청에서 전산자료를 근거로 교육청에 교육지원대상자로 통보
- 가족 추가, 학교 전학 등 변동사항 발생 시에는 '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'를 발급받아 입학(전학) 또는 학교 행정실에 제출하세요.
- 학습보조비를 지원해 드립니다.
 - 연간 지급액 : 중학교 124,000원, 고등학교 144,000원(인문계), 186,000원(전문계)
 - 지급시기 : 4월15일, 10월15일에 나누어 지급
 - 고등학교의 경우는 수업료, 학교운영지원비가 면제됩니다.
 - ※ 재학 중 신규로 518민주유공자가 되었을 경우에도 절차 동일

▶ 대학교는 어떤 지원이 있나요?

- 대학별 국가보훈대상자 대학입학 특별전형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.(일부대학 미실시)
 - 가까운 보훈청 또는 주민센터나 인터넷 '정부24'에서 '대학입학특별전형대상자 증명서'를 발급받아 원서접수 시 첨부
 - 국가보훈대상자 대학입학 특별전형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(www.mpva.go.kr) > 예우보상 > 지원안내 > 교육지원 > 대학별 특별전형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라며, 자세한 사항은 해당 대학에 문의하세요.
- 합격하셨다면, '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 증명서'를 발급받아 대학교 장학과 (또는 행정실)에 제출하세요. 등록금 면제 등의 수혜가 있습니다.
 - 재학 중 신규로 5·18민주유공자가 되었을 경우에도 절차 동일
- 등록금(수업료)이 면제됩니다.
 - 일반대학교의 등록금(수업료) 면제기간

2년제 대학	3년제 대학	4년제 대학	5년제 대학	6년제 대학
4학기	6학기	8학기	10학기	12학기

- 수업연한이 없는 학점인정 교육기관의 면제학점

구분	2년제	3년제	4년제
면제학점	84학점 이하	126학점 이하	168학점 이하

※ 5·18민주유공자 본인 및 5·18민주화운동사망자(행불자)의 배우자는 등록금 면제에 있어 기간, 성적 등의 제한없음
(자녀는 직전학기 성적 70점 이상인 경우(입학학기 제외)만 면제)

○ 학습보조비가 지급됩니다.

- 학습보조비는 5·18민주유공자 본인 및 5·18민주화운동사망자(행불자)의 배우자에게만 지원되며, 연간 236,000원을 2회(4월 15일, 10월 15일)에 나누어 지급
- ※ 학습보조비의 경우 국가유공자 본인도 지급기간에 따른 제한 있음(보훈관서 문의)

▶ 특수교육을 받고 있어요

- 관할 보훈청에 재학증명서와 특수교육대상자(장애인)임을 입증하는 서류 제출
- 다음과 같은 수혜가 있습니다.
 - 유치원 과정부터 학습보조비(4월 15일, 10월 15일) 지급
 - 연간 지급액 : 유치원·초등학교 534,000원, / 중·고등학교 718,000원
 - ※ 특수교육대상자 외에는 중학교부터 교육지원이 실시됩니다.

▶ 장학금은 없나요?

- 대학원과 특수학교 장학금이 있으며, 신청자 중 선발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합니다.
- 신청 시기 : 4월초 및 9월초 한달간
- 신청 장소 : 재학 중인 학교를 관리하는 보훈청
- 신청 자격
 - 대학원 장학 : 대학원 석·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5·18민주유공자 본인 및 사망자(행불자) 배우자로 직전학기 평균 80점 이상
 - ※ 지원제외 : 정규 첫학기, 해외유학·원격대학원생, 해당과정 수업연한 초과자, 동등과정 수혜자
 - 특수 장학 : 특수교육대상자로 유치원 및 초·중·고등학교에 재학하는 5·18민주유공자 본인 또는 자녀
- 제출 서류
 - 대학원 장학 : 보훈장학신청서 1통, 재학증명서 1통, 성적증명서 1통, 등록금 납입증명서 1통
 - 특수 장학 : 보훈장학신청서 1통
- 지급금액
 - 대학원 장학 : 최고 1,300,000원
 - 특수 장학 : 300,000원

▶ 518민주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, 자녀의 취업을 도와드립니다.

- ▶ '16. 6. 23. 이후 신규등록한 518부상자 중 장애등급 12급 이하 자녀 및 그 밖의 518희생자 자녀는 취업지원 비대상
- ▶ '16. 6. 23. 이후 신규등록자의 장애등급 11급 이상 및 518사망자 또는 행방 불명자의 자녀인 경우, 자녀는 1인에 한하여 지원되고 취업알선 횟수도 1인 3회로 제한(가점지원 제한 없음)

▶ 채용시험 시 가산점(10% 또는 5%)을 받을 수 있습니다

- 가까운 보훈청 방문 또는 정부24(www.gov.kr), 읍·면·동주민센터의 어디서나 민원에서 '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'를 발급받아 제출
 - 기업체, 초·중등교육법, 유아교육법에 의한 교사 등의 채용시험 : 원서접수 시 첨부
 - 6급 이하 공무원 시험 : 답안지의 취업지원대상자 가산 표기 란에 표시하면 가산되며, 합격자 발표 후 제출(반드시 채용시험공고문을 확인하여야 하며, 증명서 제출이 생략되는 경우가 있음)
- 가점내용
 - 518민주유공자 본인, 518민주화운동사망(행불)자의 유족 : 10%
 - 518민주화운동부상자·희생자의 가족 : 5%

▶ 취업이 어려우시다면...

- 이력서(사진 부착) 및 자기소개서 1통, 취업관련 자격증 사본 등을 준비
- 취업희망업체를 관할하는 보훈청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
 - 국가보훈부 취업정보시스템(<https://job.mpva.go.kr>)으로 신청 가능
 - 기업체 직종 확보 후 자격요건 등을 고려, 추천을 통해 직장을 알선
 - ※ 자녀는 39세까지 신청 가능
 - 운전직·방호직 등 일부 직렬 공무원을 희망하는 분은 자격요건 등에 따라 보훈대상자 특별채용 시 추천

▶ 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합니다

- 가까운 보훈청을 방문, '우선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 추천서'를 발급받아 해당 훈련 기관에 제출하시면 우선선발 대상으로 입소하실 수 있습니다.
 - 공공직업훈련기관 : 기능대학,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원, 장애인고용공단 직업능력개발원, 직업전문학교 등
 - ※ 우선선발 모집 정원 및 선발 방법은 개별 모집 공고 확인 필
- 공공직업훈련기관에서 직업훈련을 받으면, 월 4만원의 장려금도 지급합니다.
 - 관할 보훈청에서 해당 훈련기관에 확인하여 매 분기 말 교육훈련 받는 분의 은행 계좌로 입금
 - ※ 기능대학의 학위과정 수료자 및 140시간(주20시간) 미만 과정 수료자는 지급대상 아님
 - ※ 법정취업자의 경우 지원 불가
 - ※ 지원 횟수 3회 (동일 과정 및 과목 지원 불가)

▶ 취업능력 향상을 위해 학원에서 수강하고 싶어요

- 취업수강료 지원을 희망하는 분은 국가보훈부 취업정보시스템 (<https://job.mpva.go.kr>)에서 취업수강료 (지원과정(목) 및 지정교육기관) 확인 후, 교육기관에 수강료 전액을 납부하고 수강 등록 후, 관할 보훈청에 '취업능력개발 비용 지원 신청 및 확인서, 개인정보사전동의서, 서약서, 영수증'을 먼저 제출하세요. (수강기간이 종료된 경우라도 수강종료일로부터 1년까지는 신청 가능)
 - 신청대상 및 예산범위 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여부 결정 → 관할 보훈청
 - ※ 타부처(자치단체 포함) 중복지원 불가 (예 : 내일배움카드)
 - 학습 진도율 80% 이상(수강기간 2/3 이상) 이수한 후 보훈청에 취업수강료 청구 (구비서류 : 수강완료 사실확인서, 응시확인서류, 지정계좌 신청 및 동의서, 통장 사본)
 - 보훈청에서 수강신청자 본인명의 계좌로 수강료(70%) 입금
 - 1인당 지원한도액 : 국가유공자 등 본인 총 3,000,000원 (연간 1,500,000원)
 - 유가족 총 1,500,000원 (연간 750,000원)
- ※ 단, 법정취업자, 수강료 부정수급자 등은 지급된 수강료 환수 및 지원대상 제외
 ※ 수강료 외 시험응시(수수)료, 검정(수수)료, 교재비는 미지원
 ※ 경비신입교육(일반, 특수)과정은 수강료 100% 지원

취업정보시스템 이용 안내

- 취업정보시스템을 통해 보훈관서 채용정보, 취업수강료 지원, 이력서 작성 기법 등 다양한 취업정보를 제공하오니, 많은 이용 바랍니다.
- ☎ 사이트 주소 : <https://job.mpva.go.kr>



▶ 보훈병원을 이용하세요

- 진료 접수 시 신분증 또는 국가보훈등록증을 제시(단, 치아보철, 성형 등은 제외)
 - 감면내용
 - 국비 진료 : 5·18민주화운동부상자 본인
 - 60%감면 : 5·18민주화운동부상자의 가족 및 5·18민주화운동사망자(행불자)의 유족
 - 50%감면 : 기타 5·18민주화운동희생자 본인
 - 30%감면 : 기타 5·18민주화운동희생자의 유가족
- ※ '16. 6. 23. 이후 신규 등록된 유공자의 경우,
 - 감면대상 가족은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(부모인 경우 부모 모두)에 한함
- ※ '16. 6. 23. 이후 신규 등록된 5·18민주화운동 부상자 중 장애등급 12~14급의 경우,
 - 상이처 외 질환에 대해서는 진료비의 10%를 본인이 부담
- 보훈병원 주소 및 전화번호
 - 중앙보훈병원 : 서울시 강동구 진황도로 61길 53(☎ 02-2225-1114)
 - 부산보훈병원 : 부산시 사상구 백양대로 420(☎ 051-601-6000)
 - 광주보훈병원 : 광주시 광산구 첨단월봉로 99(☎ 062-602-6114)
 - 대구보훈병원 : 대구시 달서구 월곡로 60(☎ 053-630-7000)
 - 대전보훈병원 : 대전시 대덕구 대청로 82번길 147(☎ 042-939-0114)
 - 인천보훈병원 : 인천시 미추홀구 인주대로 138(☎ 032-363-9800)
 - 중앙보훈병원 서울요양병원 : 서울시 강동구 진황도로 61길 53(☎ 02-2225-1123)
 - 부산보훈병원 부산요양병원 : 부산시 사상구 백양대로 420(☎ 051-601-8600)
 - 광주보훈병원 광주요양병원 : 광주시 광산구 첨단월봉로 99(☎ 062-604-5600)

▶ 가까운 병원에서는 진료 받을 수 없나요?

- 5·18민주화운동부상자는 지정병원에서 국비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.
- 국가보훈부 홈페이지(www.mpva.go.kr) <예우보상> <지원안내> <의료지원 및 위탁병원> 위탁병원 명단이나 보훈상담센터(1577-0606)에서 가까운 위탁병원 확인 후,
- 위탁병원 진료 접수 시, 신분증을 제시하고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.
 - 지원 범위 : 건강보험 급여부분과 비급여 일부 항목(초음파 검사, MRI, 건위소화제)

▶ 응급상황 발생으로 일반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...

- 5·18민주화운동부상자의 생명이 위독한 경우 등 응급상황이 발생하여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까지 이동이 불가능하여 일반병원 응급실을 이용했다면,
- 반드시, 주소지 관할 보훈청에 방문 또는 전화로 입원 사실을 알려야 하며, 입원한 날부터 **13일 이내에 연장신청** 해야 합니다.
 - ※ 미연장 시 최초입원일부터 14일이 되는 시점까지만 지원
- 입원한 날로 3년 이내에 관련 서류를 보훈청에 제출
 - 제출서류 : 진료비 영수증, 진료비 상세내역서, 응급실 기록지, 진단서 등
- 제출서류 등으로 보훈병원의 심사를 거쳐 진료비를 반환해 드립니다.

▶ 보건소에서 진료비를 감면해드려요

- 5·18민주유공자 또는 유가족이 보건소 진료 시 국가보훈등록증을 제시하면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따라 본인부담금의 전액 또는 일부가 면제됩니다.

▶ 신체 장애로 거동이 불편합니다

- 관할 보훈(지)청에서 5·18민주화운동부상자에게 보철구 지급신청 안내
 - 보철구 수명 등을 고려한 연도별 지급계획에 의한
 - 유공자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품목 희망시 관할 보훈(지)청에서 안내-접수
- 5·18민주화운동부상자의 지급신청에 따라 해당 보철구 지급
 - 철 크러치, 목발, 지팡이는 관할 보훈(지)청 또는 보장구 센터 방문시 지급
 - 기타 품목은 보훈병원 보장구 센터에서 지급

※ 의료급여증 발급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거주지 관할 지자체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적용대상

- 「5·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라 보상금 등을 받은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 - 사망자(상이 후 사망자 포함)의 선순위 유족과 그 가족
 - 행방불명자의 선순위 유족과 그 가족
 - 상이등급 1~14급 및 기타 1~2급의 판정을 받은 상이자와 그 가족
 - 상이자 사망 시 선순위 유족과 그 가족
- * '23.1.1. 이후 수권자 승계를 한 경우 기존 대상자는 1종 자격유지, 동일세대 신규 전입가구원을 대상으로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·2종 부여
- 기소 및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자(당사자에 한함, 가족 제외). 단, 구금 후 기소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지 않고 훈방 조치된 경우에는 의료급여 지원대상이 아님



5·18민주화운동부상자 본인만 해당되며, 보철용 차량 1대에 대해서만 지원됩니다.

▶ 각각의 지원을 다른 차량에 분리하여 적용 불가

▶ 차량을 구입하고자 하는데 수혜는?

○ 아래 요건에 해당된다면, 국가보훈등록증 사본을 자동차영업소 및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세요. 지방세(취득세, 자동차세), 개별소비세(승용자동차), 환경개선부담금(경유 차량), 도시철도 채권 및 지역개발사업 지방채 매입이 면제됩니다.

- 지방세 면제요건

· 국가유공자 또는 주민등록상 동거가족(사위·형제·자매 포함)과의 공동명의인 배기량 2,000cc 이하 승용차, 7~10인승 승용차, 15인승 이하 승합차, 1톤 이하 화물차, 배기량 250cc 이하 이륜자동차 중 1대

- 도시철도 채권 면제요건

· 국가유공자 또는 주민등록상 동거가족(사위·형제·자매 포함)과의 공동명의인 6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차, 7인승 이상 승용차, 소형 승합차, 소형 화물차, 소형 특수차 중 1대

유의사항

· 지방세(취득세) : 차량등록 후 1년 이내 매각 또는 공동명의자와 별거 시 면제금액을 전액 반환해야 합니다.

· 개별소비세 : 차량등록 후 5년 이내 매각 또는 공동명의자와 별거 시 잔여기간에 해당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. ※ 배기량 제한없음 / 면제금액 500만원 한도

· 지역개발사업지방채(배기량 제한 없음) : 지역마다 혜택이 다름

▶ 주차료 감면도 되나요?

○ 자동차표지는 일반표지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로 구분되며, 가까운 보훈(지)청에서 자동차등록사항 확인 후 즉시 발급해 드립니다.

- 일반표지 발급대상(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불가)

· 5·18민주화운동부상자 또는 주민등록상 동거가족(사위·형제·자매 포함)과 공동명의 동거가족 소유차량 1대

-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

· 일반표지 발급대상이면서, 장애등급 1~3급은 전원, 4~7급은 상이호수에 따라 적용 (자세한 사항은 보훈청 복지과로 문의)

○ 자동차표지를 수령하여 차량 앞 유리창에 부착하고 운행하시기 바랍니다.

○ 공영주차장 주차료 할인 : 50~80%(지자체 조례에 따라 감면대상 및 감면율이 다름)

- 5·18민주화운동부상자 승차 시에 한하며, 5·18민주유공자증 제시 필요

※ 보철용차량 사용 중 국가유공자께서 작고하시면 가까운 보훈청에 꼭 신고해 주시고, 주차표지를 반납하셔야 합니다.

* 통합복지카드는 신한카드 고객센터(☎ 1544-7000)에 해지신청 해주세요.

※ 보철용차량 등록은 동주민센터와 중복 신청이 안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※ 비영업용 보철용차량 및 사업용 개인택시(보철용차량 등록하여 자동차표지 발급 차량)의 경우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(정기 종합) 수수료가 80% 할인됩니다.

▶ 통합복지카드는 어떤 혜택이 있나요?

○ 유료도로 통행료가 감면됩니다.(장해 1~5급은 면제, 장해 6~14급은 50% 할인)

- 감면차량 : 배기량 2,000cc이하 승용차, 6~10인 승용차, 12인승 이하 승합차, 1톤이하 화물차, 전기·수소차 중 1대

- 국가유공자 탑승 시 고속도로 요금소에 통합복지카드 제시

▶ **감면행복달달기는 한국도로공사 콜센터(1588-2504) 또는 제조사 휴먼케어(1688-3017) 및 엠피온(1544-8202)을 통해 구입하여 가까운 보훈청에서 지문인식 등록 후 사용 가능**

○ LPG 차량은 가스충전요금이 할인됩니다.

- 통합복지카드로 가스 충전시 월 300ℓ 까지 세금인상분 지원(세금 인상, 인화에 따른 변동 있음)

※ 50ℓ 추가신청 가능한 경우 : 사업장·직장·학교가 자택에서 왕복 80km이상인 경우(일기준)

- LPG차량 사용 중 유공자가 사망하시면 복지카드사용 즉시 정지

○ 전국의 시내버스·지하철 이용이 가능합니다.

※ 시내버스 승차요금 인식 → 국가보훈부가 카드사와 사후 정산

○ 친환경차량(전기·수소차)은 충전비와 구매보조금을 지원해드립니다.

- 충전비 : 월 29,000원 한도 내 (복지카드로 충전시 지원)

- 구매보조금 : 2022년 1월 1일 이후, 신규 등록된 차량에 대해 100만원 지원

※ 중고 구입이 아닌 신차 구입시 지원, 차량 최초등록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

○ 보철용 차량 개조비용을 지원해 드립니다.

- 지원대상 : 상이 1~5급

- 지원내용 : 상이국가유공자 등이 사용하는 보철용 차량을 신제조조건에 맞게 개조하는 경우, 차량 개조에 따른 비용을 한도(인당 1,500만원) 내 지원

▶ 통합복지카드를 발급 받으려면...

○ 국가유공자 신분증 및 사진(3.5×4.5cm) 1매를 준비하여 가까운 보훈청에 신청하시면 통합복지카드를 발급해 드립니다.(30일 정도 소요)

- 신용카드 기능(시중 모든 은행계좌 가능) / 직불카드 기능(신한은행, 우체국계좌 만 가능)

LPG·전기·수소차량 이용시 주의사항

· 상이국가유공자의 장애기능 보원을 위해 보철용 차량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

※ 본인만 사용해야 함

※ 유공자 사망, 세대분리, 해외체류, 차량매각, 타인대여 등 부당사용이 확인될 경우 지원정지 및 부당사용금액 환수

5·18민주유공자와 수권 유족에게 지원합니다.

▶ 아파트 특별공급(분양, 임대)을 받고 싶습니다

- 신청자격은?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등에 따라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분
 - 5·18민주유공자 본인 및 수권 유족
 - 아파트 특별공급 지원 후 만 3년이 경과한 분
 - 신청일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(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은 보존관서에 문의)
 - ※ 특별공급(분양 또는 분양전환공공임대)을 한차례라도 받은 분은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55조에 의하여 아파트 분양·분양전환공공임대 지원 대상에서 제외
- 주소지 관할 보존청에 신청하세요
 - 주택우선공급신청서(신청서 서식은 신청 장소에 비치) 1통
 - 개인정보동의서(동의서 서식은 신청 장소에 비치) 1통
 - 추천서약서(서약서 서식은 신청 장소에 비치) 1통
 - 무주택임증서류 : 현주소지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(전유부) 1통
 -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1통
 - 배우자 및 본인·배우자의 동거가족 도장
 - ※ 매년 1월 초 접수기간(나라사랑신문 공고 확인 요망) 이후 신청시 순위부 마지막 순서로 배정
 - ※ 전년도 신청자 중 알선받지 못한 분은 재신청할 필요 없음
- 신청 후에는?
 - 배정기준(무주택 기간, 희생 및 공헌도, 전년도 미지원 여부 등)에 따라 당해년도 우선순위를 결정
 - 국가유공자용 특별공급 물량이 배정되면 해당 아파트 신청자 중 우선순위부 순서대로 추천
 - ※ 특별공급 신청 시 기재하신 휴대폰으로 확보된 주택의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알려드립니다

▶ 긴급자금이 필요한데... - 5·18민주유공자 및 수권 유족

- 전국 국민은행, 농협은행의 “나라사랑 대출창구”에서 대출을 해드립니다.
 - 주택구입(신축)대부 :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신청인 명의(배우자 공동명의 포함)로 주택을 구입(신축)하는 경우
 - 주택임차대부 :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신청인 명의(배우자 공동명의 포함)의 전·월세 임대차계약을 하는 가구
 - 주택개량대부 : 신축 5년 이상 경과된 소유주택을 개보수하려는 가구
 - 사업(창업)대부 : 본인, 배우자 또는 1년 이상 동거하고 있는 직계 존·비속이 사업 중이거나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가구
 - 농토구입대부 : 본인명의(배우자 공동명의 포함) 농토구입 예정자로 본인 또는 배우자, 1년 이상 동거하고 있는 직계 존·비속이 해당지역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가구
 - 생활안정대부 : 생활비, 재해복구비, 의료비, 경조비, 보철용차량 구입 등 가계자금이 필요한 가구
 - ※ 대부 신청 관련 상담 및 구비서류 안내는 국민은행, 농협은행 전국 지점의 “나라사랑 대출 창구”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대부종류 및 조건

구분	대부한도액	연이율	상환기간	담보조건
아파트 분양	3,000~6,000만원	연 2.5%	20년균등	분양 아파트 (후취담보시 군인연금, 보훈급여금, 연대보증인-직접대부 시)
주택구입(신축)	3,000~6,000만원	연 2.5%	20년균등	구입(신축)주택
주택임차	2,000~4,500만원	연 2.5%	7년균등	부동산·보훈급여금(군인연금)
주택개량	800만원	연 3.5%	7년균등	부동산·보훈급여금(군인연금)
농토구입	3,000만원	연 2.5%	3년거치 10년균등	구입농토
사업(창업)	2,000만원	연 3.5%	7년균등	부동산·보훈급여금(군인연금)
생활안정 (보철용 차량 구입시)	300만원 (1,000만원)	연 2%	3년균등 (보철용 차량 5년 균등)	부동산·보훈급여금(군인연금) ·연대보증인(직접대부 시)

- ※ 보철용차량 구입 대부는 5·18민주화운동 부상자 본인만 가능
- ※ 보증보험은 위탁은행 대부시에만 담보 가능(위탁은행 문의)
- ※ 보훈급여금(군인연금)을 담보로 제공하는 생활안정대부(한도300만원)에 한하여 온라인 신청 도입(24.1.-)
 - 국민은행(KB스타뱅킹) 또는 농협은행(NH뱅킹) 앱을 통해 신청

- 국민은행, 농협은행 “나라사랑 대출”이 불가능한 신용관리대상자는 관할 보존청에 문의하세요.(예산 범위 내에서 보존청에서 직접 대부 지원)

▶ “나라사랑 대부금”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세금감면이 된다던데...

- 대부받은 국민은행, 농협은행 지점(보훈청 대상자는 관할 보존청)에서 ‘조세면제(감면)증명서’, ‘대부재산증명서’를 발급받아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과에 제출
 - 취득세 면제(대부금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)
 - ※ 취득의 기준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세무과에 직접 문의 필요
 - 농토 : 대부금액에 대하여 감면
 - 주택 : 전용면적 85㎡ 이하인 경우 취득금액에 대해 면제
전용면적 85㎡ 초과인 경우 대부금액에 대해서만 감면

▶ 가정에서 복지서비스를 받고 싶습니다

- 관할 보훈청에 '보훈재가복지서비스 지원신청서'를 제출하세요.
 - 신청대상 : 5·18민주유공자 및 수권 유족(배우자 또는 부모)
 - 선정기준 : 65세 이상으로 노인성 질환 또는 상이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일상생활 수행이 곤란하고, 독거 또는 노인부부세대로 생활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분
 - ※ 제외대상 : 국고사업에 의하여 동일한 또는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분 (예 : 장기요양급여 또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)
 - 대상결정 : 생활수준조사 등을 통해 적격여부를 심사 후, 서비스 지원대상자 결정
 - 서비스지원 : 재가보훈실무관이 가정을 방문하여 가사활동·정서지원 등 재가서비스 제공
 - ※ 주1~2회(1회 1~2시간 서비스 제공)

▶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하고 싶어요

- 관할 보훈청에 '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서'를 제출하세요
 - 신청대상(아래 사항이 모두 해당하는 분)
 - 5·18민주유공자 및 배우자, 수권 유족(부모)
 -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요양등급 1~5등급 받고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제공받고 있는 분
 -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분
 - 구비서류
 -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각 1부
 - 요양원 입소확인서 또는 요양기관 이용계약서 사본 1부
 - ※ 기타 생활수준조사를 위한 동의서 등 필요
-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,
 -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 본인부담액을 통보 받아, 매월 15일 본인 계좌로 환급
 - 부상자 : 본인부담액의 80% 지원
 - 희생자 및 배우자, 수권 유족(부모) : 본인부담액의 40% 지원(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인 경우 60%)
 - ※ 식재료비, 간식비, 상급 침실료 등 비급여 부분 제외
 -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 이용분부터 지원

▶ 장기요양 필요로 보훈요양원에 입소하고 싶습니다

- 보훈청을 거치지 않고 보훈요양원에 직접 신청합니다
 - 자세한 사항은 입소하고자 하는 보훈요양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 - ※ 수원보훈요양원 ☎ 031-240-9000, 광주보훈요양원 ☎ 062-602-5800
 - 김해보훈요양원 ☎ 055-340-8585, 대구보훈요양원 ☎ 053-606-3000
 - 대전보훈요양원 ☎ 042-829-3000, 남양주보훈요양원 ☎ 031-579-7000
 - 원주보훈요양원 ☎ 033-769-2000, 전주보훈요양원 ☎ 063-220-0777
- 보훈요양원에 입소하시면, 요양급여비 중 급여부분 일부 감면
 - 감면대상 : 5·18 민주유공자 및 배우자, 수권 유족(부모)으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분
 - 감면율
 - 부상자 : 본인부담액의 80% 감면
 - 희생자 본인, 배우자 및 유족(부모) : 본인 부담액의 40% 감면(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인 경우 60%)
 - ※ 식재료비, 간식비, 상급 침실료 등 비급여 부분 제외

▶ 부양할 사람이 없어 보훈원에 입소하고 싶어요

- 신청대상 : 5·18민주 유공자 및 유족(자녀 제외)으로 부양의무자가 없는 분
 - 국가유공자 및 유족은 남자65세 이상, 여자 60세 이상(부상자는 남자 60세 이상, 여자 55세 이상)
-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입증 서류 필요
- 보훈원에 입소하시면 의식주 제공 및 의료자원, 사망 시 국립묘지 안장 등 지원
- 입소대상 여부 확인 및 신청은 보훈원에서 확인 및 접수 진행합니다.
 - ※ 보훈원 ☎ 031-250-1521

▶ 부양할 사람이 없어 복지타운에 입주하고 싶어요

- 신청대상 : 민법상 성인인 5·18민주유공자 및 유족 중 무주택자로, 일상적인 신변관리가 독자적으로 가능한 독신 또는 부부세대
-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입증 서류 필요
- 본인 및 배우자 명의의 주택이 없어야 함
- 입주대상 여부 확인 및 신청은 복지타운에서 확인 및 접수 진행합니다.
 - ※ 복지타운 ☎ 031-250-1562
- 임대보증금 : 8평형(독신세대) 150만원, 13평형(부부세대) 250만원 *월 관리비 별도

▶ 생계지원금을 지급합니다

- 신청대상은 80세 이상 5·18민주유공자 또는 선순위유족 중 생활이 곤란한 분
 - 지급대상 : 생활수준조사(소득·재산) 결과 기준 중위소득의 50%이하
 - 지원금액 : 월 15만원



5·18민주부상자는 아래와 같은 지원이 있습니다.

▶ 5·18민주화운동희생자 및 수권 유족은 국내선 항공기만 30% 할인

▶ 아래와 같이 사용하시면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

수송시설	이용방법	지원내용	감면율
기차	·매표창구에 국가보훈등록증 제시 → 승차권 교부	·KTX, SRT 등 전 차종 이용가능 ·장애등급 1~2급은 보호자 1인 포함 ·연간 무임 6회(승차일 기준), 50% 할인(무제한) ·특실 제외	무임 6회 50% 할인 (무제한)
지하철	·복지카드 사용 또는 ·무인 발권기에 국가보훈등록증을 접촉 시켜 1회용 우대권 발급 (보증금 500원 필요)	·장애등급 1급은 보호자 1인 포함	무임 (1~14급)
공항철도	·복지카드 사용 또는 ·매표창구에 국가보훈등록증 제시 → 승차권 교부	·장애등급 1급은 보호자 1인 포함 ·직통열차는 제외	무임 (1~14급)
시내버스 (농어촌)	·복지카드 사용	·장애등급 1급은 보호자 1인 포함 ·광역, 좌석, 마을버스 제외	무임 (1~14급)
시외버스	·매표창구에 수송시설용 5·18민주유공자증서(골드색) 제시	·장애등급 1급은 보호자 1인 포함 ·장애등급 1~7급은 농어촌버스 무임	70% (1~7급)
			30% 할인 (8~14급)
고속버스 (우등고속)	·매표창구에 수송시설용 5·18민주유공자증서(골드색) 제시	·장애등급 1급은 보호자 1인 포함 ·프리미엄고속버스 제외	50% 할인 (1~7급)
			30% 할인 (8~14급)
국내 여객선	·매표창구에 국가보훈등록증 제시 *중이승선이용권 폐지	·육지거주자 연 6회 ·도서거주자 연 12회 ·장애등급 1급은 보호자 1인 포함	무임 (1~7급)
			50% 할인 (8~14급)

국제 여객선	·매표창구에 국가보훈등록증 제시	·한국 ↔ 중국 및 일본간 일부 선박회사 ·한국에서 발권한 승선권에 한정함 ·일부 노선의 경우 선사별 차이	객실요금 20% 할인 (1~14급)
국내선 항공기	·매표창구에 국가보훈등록증 제시	·대한항공, 아시아나 ·5·18민주부상자의 공항이용료 50% 할인 → 티켓 발권 시 포함 (단 대한항공은 동반가족 할인 없음) * 자기항공사(제주항공, 이스타항공 등) 할인을 별도 확인 필요	50% 할인 (1~14급)
			30% 할인 (희생자 및 수권 유족)

※ 부정 사용 확인 시 관련 규정(여객운송약관 및 국가유공자 예우법, 보훈보상대상자법)에 의하여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.



▶ **천재지변·화재 등으로 재산 및 인명 피해를 입었어요 - 5·18민주유공자 및 수권 유족**

- 관할 보호청 복지과에 재해발생 신고
 - 보호청에서 행정안전부의 '재난관리업무포털'로 피해사실 확인 및 신청자 '재해발생신고서', '피해사실확인서' 제출 (소방서, 경찰서 또는 시·읍·면·동주민센터에서 발급)
- 지급기준 해당여부 확인 후 재해위로금 지급

▶ **보훈휴양원 및 협약콘도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.**

▶ 국가보훈등록증 제시 필요, 협약콘도 및 이용방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> 예우보상 > 지원안내 > 기타지원 > 협약콘도 이용안내 참조

협약콘도(명)	내용	예약문의
보훈휴양원	충주 보훈휴양원 연중 이용 가능	☎ 043-854-2121 또는 http://condo.bohun.or.kr
소노호텔&리조트(前 대명)	15개 지역(패밀리 및 스위트 타입) * 비수기 평일 주중(주말, 연휴, 성수기(예약 제외)) * 잔여객실에 한해 협약 요금으로 이용 가능	전화☎ 1588-4888 또는 홈페이지 https://www.sonohotelsresorts.com * 이용권 번호(홈온리) : 52099159 * 소노리조트(소노캄비발디/경주, 솔비저남해) 객실(홈온리) 52099324
한화리조트	12개 지역(20평형대 디럭스 타입) * 비수기 평일 주중, 주말(잔여 객실에 한함) * 성수기는 잔여 객실이 있을 경우 이용 가능	홈페이지 예약 www.hanwharesort.co.kr * 고객센터 : 11806536
일성리조트	7개 지역(19~40평형대 타입) * 비수기 평일 주중(잔여객실에 한해 협약요금) * 제주비치는 금·일 주말요금 적용 * 부록은 상시영업이 아니므로 예약가능 여부를 해당 지점에 사전 확인(☎055-536-9870) * 금, 토, 공휴일 전일 예약은 가능하나, 별도 요금 적용 * 자세한 이용사항은 업체 문의	전화예약☎ 1566-8113 또는 예약사이트 www.ilsungresort.co.kr * 법인번호 : 62239063
호반호텔앤리조트	3개 지역 * 연중(주말 연휴 제외 / 잔여 객실에 한해 협약요금) * 아일랜드리조트(안면도), 포레스트리조트(제천), 레스트리조트(제천) 주말, 연휴 예약불가 * 자세한 이용사항 업체 문의	홈페이지 예약(www.resom.co.kr) * 리솜 홈페이지(resom.co.kr) 접속 후 우측상단 회원가입 > 회원정보에서 "MOU" 선택 > 업체 "국가보훈부" 선택 후 인증번호(1400) 입력 > 회원가입 완료 후 "패키지 예약" 진행
청풍리조트	충북 제천 소재(7.9평형 스탠다드 타입) * 비수기 평일 주중, 주말 * 잔여 객실에 한해 협약요금으로 이용 가능 * 성수기, 연휴 등 예약 가능하나, 요금 별도문의	전화예약☎ 043-640-7000
주문진리조트	강원 강릉시 주문진 소재(10~19평형대 타입) * 비수기 평일 주중, 주말 * 성수기, 연휴기간은 요금 별도 문의	전화예약☎ 033-661-7400

* 예약번호, 고객센터 등은 변경될 수 있으니, 이용 전 반드시 확인요망

▶ **개인택시면허 신청용 증명서를 발급합니다.**

- 개인택시면허 신청은 지방자치단체별 공고문 요건에 따름
- 관할 보호청에서 '개인택시면허 신청용 증명서'를 발급받아 첨부·신청
 - 개인택시면허 신청용 증명 발급은 5·18민주유공자(수권 유족)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 (유공자의 부모, 배우자, 자녀) 중 1인에게만 발급
* 수권자가 부모인 경우 유공자의 제매 포함

▶ **건강과 문화생활을 여유롭게**

- 시설 이용 시 국가보훈등록증을 제시하시면, 할인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.
 - 대상 : 518민주유공자 및 그 배우자, 수권유족
단, 수권 유족이 부모인 경우 부·모 모두 해당
 - 100% 감면시설 : 고궁 및 능원, 국·공립공원, 독립기념관, 전쟁기념관, 국·공립박물관 및 미술관, 국·공립수목원, 국·공립 자연휴양림
 - 50% 할인시설 : 국·공립 공연장(대관공연 제외), 공공체육시설

▶ **세금공제 혜택 - 5·18민주부상자**

구분	감면내용	감면방법
연말정산 추가 소득공제	연말 소득정산 시 200만원 추가 공제	국가보훈부에서 국세청에 일괄 전송 (국가유공자확인원 제출 불요)
비과세종합저축 소득세 비과세	5천만원 이하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시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(*25.12.31.전 가입시 직전 3개 연도 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제외)	국가보훈등록증 사본 또는 확인원 제출
상속세, 증여세	상이국가유공자에 대한 상속세 인적공제 증여받은 재산(신탁재산)의 과세가액 불산입(5억원 한도)	

※ 부양가족공제는 유공자본인의 연간소득금액합계액이 100만원이하하여야 함.

▶ **증명발급 수수료 등 면제 - 5·18민주유공자 및 수권 유족**

구분	감면율	감면방법
주민등록 열람 및 교부수수료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가족관계증명서, 지자체 제증명 수수료 인감증명 발급 및 변경신고 수수료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수수료,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수수료	면제	국가보훈등록증 제시

▶ **TV 수신료 및 통신요금 등의 감면 - 5·18민주부상자**

구분	감면내용	감면방법
TV 수신료 면제	면제(월 2,500원)	KBS수신료콜센터(1588-1801) 또는 한전고객센터(123)으로 신청
전기요금 할인 (장해 1~3급만 해당)	·가정용 전기요금 월 1만6천원 한도 감액(하계(6. 1.-8. 31):월 2만원 한도)	한전고객센터(123)으로 신청
도시가스 요금 할인 (장해 1~3급만 해당)	·난방용 동절기 72,000원 *적용 25.12.1.-26.3.31. (이후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확인) ·기타 월 9,900원 할인 ·취사용 매월 1,680원 할인	국가보훈등록증 사본, 주민 등록 등본, 도시가스 고지서를 첨부하여 신청서 제출
지역난방에너지 요금 면제 (장해 1~3급만 해당)	·월 5천원 감면 (연1회 감면총액 일괄 소급 지급) * 한국지역난방공사 관할지역에 한함	신청서 작성 후 한국지역난방공사 고객센터(1688-2488)에 팩스로 신청 (Fax. 031-705-4231, 4236)
전화요금 감면	·시내 시외통화료 50% 할인 (시외는 3만원 범위내)	해당 전화국(통신사)에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제출
이동 전화요금 감면	·가입비 면제 ·기본료, 사용료의 35% 할인	해당 통신사 지점에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제출
인터넷 통신요금 감면	·인터넷 통신요금 30% 할인	해당 통신사 지점에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제출
인천공항 Fast Track 서비스	·5·18민주부상자 본인(동반 3인 포함)	국가보훈등록증 제시

*전화, 이동전화, 인터넷의 경우 통신사에 따라 감면내용이 다를 수 있으니 해당 통신사 문의 후 가입

▶ 먼저, 가까운 보훈(지)청에 연락주세요

- 5·18민주유공자께서 돌아가신 경우 가까운 보훈(지)청에 전화하시면 영구용 태극기와 대통령령의 근조기를 장례식장으로 가져다 드리고, 화장장 감면을 위한 '국가유공자확인원' 증명도 팩스로 보내드립니다.
 - 영구용 태극기와 대통령 명외의 근조기는 각 지역 보훈병원에도 비치되어 있음
 - ※ 국가유공자 본인 국가보훈등록증 소지 시, 화장장 감면 가능(확인원 대체)

▶ 생계곤란 및 무연고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

- 지원대상 : 국가유공자, 참전유공자, 특수임무유공자, 5·18민주유공자, 고엽제후유 의증환자(수당지급 대상자)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(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)에 해당하거나 연고자가 없는 사람
- 지원내용 : 국가유공자 등 본인 사망 시 장례서비스 지원
 - ※ 계약체결 상조업체를 통해 인력 및 장례용품 지원(장례지도사, 수의, 상복, 관, 장의 차량 등)
- 신청방법 : 주소지 관할 보훈(지)청 보상과에 반드시 '장례기간' 중 유족이 신청

▶ 국립묘지 안장 신청시스템(<https://www.ncms.go.kr>)에 신청하세요



① 국립묘지 안장 신청시스템 검색



② 본인인증 후 안장신청 클릭



③ 묘지선택 후 신청

▶ 안장대상으로 통보 받으면...

- 안장식 일정을 국립5·18민주묘지와 협의하여 정하시고, 구비서류도 함께 문의하여 준비하셔야 합니다.
 - 구비서류 : 사망진단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나 화장증명서 1부
- 협의된 일자에 국립5·18민주묘지에 안장하시기 바랍니다.
 - ※ 화장장 감면 유·무 및 감면율은 해당 화장장으로 문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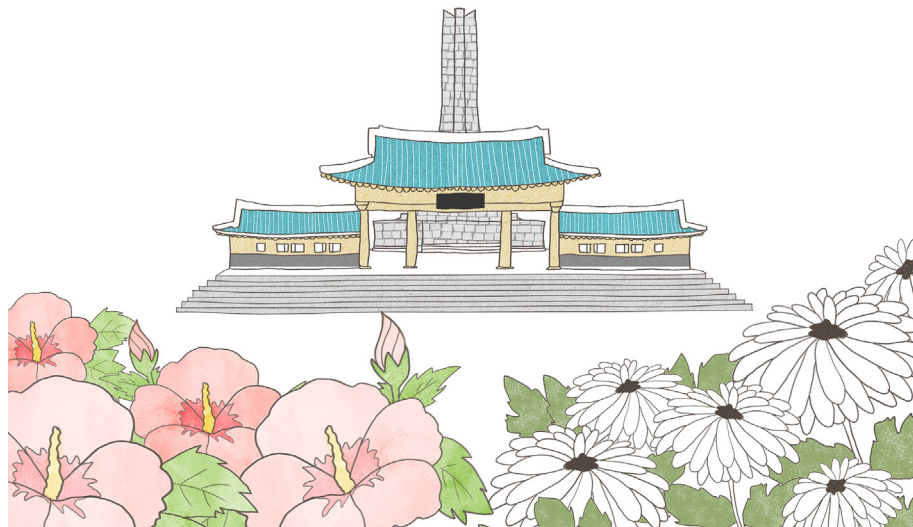
▶ 배우자를 합장하려면...

- 배우자 합장은 유공자가 국립5·18민주묘지에 안장된 경우에 가능하며, 배우자가 먼저 사망 시에는 사설묘지 등에 모셨다가 유공자 안장 시 합장 신청하시면 됩니다.

• 국립5·18민주묘지 : 광주시 북구 민주로 200 (T. 062-268-0518)

▶ 생전(生前)에 국립묘지 안장 가능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나요?

- 아래 국가유공자는 사후에 국립묘지 안장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생전 안장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 - 신청대상 : 75세 이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으로, 금고 이상의 형 선고자 또는 병적기록 이상자
 - * 국적상실자 신청 불가
 - 신청방법 : 국립묘지안장신청시스템 또는 관할보훈청·국립묘지에 신청



▶ **국립묘지 외 장소에 안장하고 싶어요**

- 선산 등에 안장한 경우 묘비 설치 후 5년 이내 관할 보훈청에 '묘비제작비 지원신청서'를 제출하시거나, 봉안장·자연장 등 안장시설에 안장한 경우에는 안치 후 5년 이내에 관할 보훈청에 '안장시설 사용료 지원신청서'를 제출하셔야 합니다.
- 제출서류 : 신청서, 비석 설치 사진(또는 안장시설 안치 사진), 세금계산서(또는 현금 영수증이나 카드전표 등의 증빙자료), 신청인 신분증 및 통장 사본
 - ※ 안장시설 사용료 지원은 '안장확인서' 추가로 필요하며 '23.1.1. 이후 사망자부터 지원 가능'
- 구비서류를 제출하시면 기당 100만원 범위 내에서 묘비제작비 또는 안장시설 사용에 소요된 실비를 유족의 통장으로 입금해 드립니다.
 - ※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된 경우에만 지원

▶ **사망신고는 어떻게 하나요?**

- 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사망 시 반드시 관할 보훈청 보상과에 신고하셔야 합니다.
 - 관할 보훈(지)청에 사망신고(전화)하시면 구비서류를 안내드립니다.
 - 승계순위 : 배우자 → 자녀 → 부모 순으로 권리 승계
- 보훈청에서 신원조회 후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선순위 유족으로 결정하고 결정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.
- 선순위 유족으로 결정 후 선순위 유족의 사진 1매(3.5X4.5cm, 6개월 이내 촬영 여권사진 크기)와 신분증 지참하여 보훈(지)청에 직접 방문하시면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.

▶ **5·18민주유공자 유족증을 받으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?**

- 그동안 5·18민주화운동부상자 본인 명의로 지원되던 수혜(교통시설 이용, 차량지원, 보철구 등) 외에 가족으로서 받던 수혜는 유지됩니다.
 - 교육, 취업, 의료, 대부, 복지지원, 고궁 무료이용 등 지원
 - ※ 5·18민주화운동희생자는 승계된 수권자의 생활정도에 따라 수혜의 승계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

꼭! 관할 보훈청에 알려주세요.

- 본인·배우자·부모·자녀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
 - 사망 또는 국적 상실, 국적 회복
 - 본인의 결혼·재혼(배우자 포함)·이혼·자녀출생·입양 등으로 친족관계가 발생·소멸된 때
 - 성명·주민등록번호 변경 또는 1년 이상 행방불명인 때
 - 5·18민주유공자(수권 유족)의 주소 변경
 - 5·18민주유공자가 금고 이상 실형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



전국 보훈청 관할구역 및 대표전화

기관명	관할지역	주소·전화번호
서울지방보훈청	서울특별시 중구, 용산구, 성동구, 광진구, 마포구, 서대문구, 강동구, 송파구, 강서구, 양천구, 영등포구, 은평구	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6 (02)3785-0815
서울남부보훈지청	서울특별시 구로구, 금천구, 관악구, 동작구, 강남구, 서초구	서울 서초구 효령로 142 (02)3019-2300
서울북부보훈지청	서울특별시 종로구, 성북구, 동대문구, 중랑구, 도봉구, 강북구, 노원구	서울 도봉구 도봉로150나길 6 (02)944-9260
경기남부보훈지청	수원, 안양, 과천, 안산, 평택, 오산, 의왕, 군포, 시흥, 화성	경기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8 (031)259-1801
인천보훈지청	인천광역시, 부천, 광명, 김포	인천 미추홀구 석성로 239 (032)588-4100
경기북부보훈지청	의정부, 동두천, 구리, 고양, 남양주, 파주, 포천, 양주, 연천, 가평, 양평	경기 의정부시 평화로 589 (031)843-5748
경기동부보훈지청	성남, 하남, 광주, 용인, 안성, 이천, 여주	경기 용인시 기흥구 구성로 124, 대경빌딩 3층(언남동) (031)289-2302
강원서부보훈지청	춘천, 원주, 화천, 양구, 홍천, 인제, 철원, 횡성	강원 춘천시 후석로440번길 64 (033)258-3609
강원동부보훈지청	강릉, 속초, 동해, 태백, 삼척, 고성, 양양, 정선, 평창, 영월	강원 강릉시 동해대로 3310 (033)610-0606
대전지방보훈청	대전광역시, 논산, 계룡, 금산, 부여	대전 서구 한밭대로 713 (042)280-1114
충남서부보훈지청	보령, 서산, 당진, 태안, 홍성, 예산, 청양, 서천	충남 홍성군 홍성읍 문화로 91 (041)630-3700
충남동부보훈지청	세종특별자치시, 천안, 아산, 공주	충남 천안시 동남구 원성1길 19 (041)589-4900
충북남부보훈지청	청주, 진천, 보은, 영동, 옥천	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047 (043)285-3213
충북북부보훈지청	충주, 제천, 단양, 음성, 괴산, 증평	충북 충주시 중원대로 3230 (043)841-8800

기관명	관할지역	주소·전화번호
대구지방보훈청	대구광역시, 상주, 김천, 구미, 경산, 성주, 칠곡, 고령, 군위, 청도	대구 달서구 화암로 301 (053)230-6010
경북북부보훈지청	안동, 영주, 문경, 봉화, 의성, 영양, 청송, 예천	경북 예천군 행복1길 5 (054)650-1400
경북남부보훈지청	경주, 포항, 영천, 영덕, 울진, 울릉	경북 경주시 금성로 355 (054)778-2600
부산지방보훈청	부산광역시	부산 중구 중앙대로148번길 13 (051)469-8991
울산보훈지청	울산광역시, 양산	울산 남구 대공원입구로 7 (052)228-6500
경남동부보훈지청	김해, 창원, 밀양, 거제, 창녕, 의령, 함안	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제2부도로 10 (055)981-5600
경남서부보훈지청	진주, 사천, 통영, 남해, 하동, 고성, 함양, 거창, 합천, 산청	경남 진주시 월아산로 2082-5 (055)752-3881
광주지방보훈청	광주광역시, 나주, 담양, 장성, 화순, 강진, 장흥, 해남, 완도	광주 북구 침단과기로208번길 43 (062)975-6500
전남동부보훈지청	순천, 여수, 광양, 곡성, 구례, 보성, 고흥	전남 순천시 팔마2길 7 (061)720-3200
전남서부보훈지청	목포, 무안, 영광, 진도, 함평, 신안, 영암	전남 목포시 관해로 29 (061)273-0093
전북동부보훈지청	전주, 남원, 완주, 진안, 장수, 임실, 순창, 무주	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남로 10 (063)239-4500
전북서부보훈지청	익산, 군산, 정읍, 김제, 부안, 고창	전북 익산시 선화로1길 58-5 (063)850-3702
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	제주특별자치도	제주 청사로 59, 3층 (064)710-8411

